



3)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소득세의 부과는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인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면 지방소득세 부과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 건은 \*\*\*\*\* 2011년 내지 2013년 각 종합소득세 \*\*\*\*\*을 적법하게 부과처분 하였고, 이 종합소득세액(과세표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의 부과처분도 적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에 응소하고자 합니다.

9. 소 송 담 당 자

- 지방세무주사 표지영
- 지방세무주사보 부경필

붙임 소장(2016구합54862) 사본 1부. 끝.

---

주무관                    부경필                    지방소득세5팀 표지영                    세입관리팀장                    이정현                    기획경제국장                    06/17 김용운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 박도규  
장

시행 세무2과-21941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53 /전송 02-3423-8818 / boopil@gangnam.go.kr / 부분공개(6)